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0회 제2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5. 12. 1(월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토보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11. 14.
- 회부일 : 2025. 11. 18. (의안번호 : 25-152)

2. 제안이유

-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제작·배부되고 있음에 따라 홍보물 심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홍보물의 정의 대상 변경(안 제2조)
-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(안 제4조~제5조)
- 홍보물 심의 대상 및 심의 제외 대상 구분 (안 제6조)
-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: 2025. 10. 10. ~ 2025.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제작·배부되고 있음에 따라 홍보물 심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○ 제2조

- 홍보물의 정의 중 예시(스티커, CD, 음원, TV 및 신문 광고 등)를 간략히 정리하여 “스티커 등”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체 표현을 정비함.

○ 제4조 제1항

- 홍보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함.

○ 제5조 제4호 (신설)

- 홍보물의 디자인 및 편집 상태 등 형식적 요소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, 보다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준 확대.

○ 제6조 제목 및 조항 정비

- 조문 제목을 “사전심의”를 “심의 대상”으로 변경하여 내용에 부합하도록 함.

- 심의가 필요한 홍보물 유형과, 심의 제외 가능 홍보물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1항과 2항으로 체계 정비.
- 심의 제외 홍보물에는 내부 문서, 정기물, 단순 행사 홍보물 등이 포함됨.

○ 제6조의2 (신설)

- 홍보물 심의 의뢰 시, 제작 20일 전에 ‘심의요구서’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공직선거법·저작권 등 관련 법률 검토 완료를 의무화함.

○ 제8조 제3항(신설)

- 홍보물 심의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하되, 필요 시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
○ 제9조 제2항

- 담당자 명칭을 “홍보팀장”을 “홍보물 심의 업무 소관 팀장”으로 명확하게 정비함.

○ 제19조 제2항

- 조례 별지 서식 명칭을 “판매소 관리대장”, “직접판매 관리 대장”으로 구체화하여 행정 문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.

③ 개정내용 검토

○ 법령 정합성 및 제도적 타당성

- 「공직선거법」, 「지식재산권법」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법 가능성을 차단.

- 홍보물 심의의 사전절차와 예외범위를 조문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.
- 위원 수 증원 및 서면심의 가능 규정 등은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.

○ 기대효과

- 홍보물의 품질 및 공공성 제고.
- 위법 소지 예방과 민원 발생 사전 차단.
- 정책 홍보물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 체계 강화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물 심의 대상과 심의 제외대상을 현행 설정에 맞게 개정하고,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